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2. 12 선고 2024나13225(본소), 2024나13232(반소) 판결
[공사대금 · 손해배상 등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2. 12 선고 2024나13225(본소), 2024나13232(반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2가단254351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24. 9. 26.

판결 선고 2024. 12. 12.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2가단254351(본소), 2024가단 204497(반소)
판결

주문

-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78,654,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28,2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3, 4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4쪽 제8행의 "견적서(갑제2호증)" 뒤에 "(그 제출일자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일과 같은

2021. 10. 18.이다)"를 추가한다.

○ 제4쪽 제13행의 "이의를 제기한 자료가 없는 점" 뒤에 "(이 사건 공사는 그 공사 결과가 외부로 노출되어 쉽게 확인 가능한 창호공사이고, 뒤에서 보듯 그 규모가 작지 않으며, 피고는 건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두고 공사의 진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였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합의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수개월에 걸쳐 계약 내용과는 다른 창호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피고가 이에 대하여 전혀 이의하지 않고 원고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4쪽 제19행의 "주장을 하나," 다음에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AW(고정창)으로 시공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계약의 본지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를 추가한다.

○ 제5쪽 제1행의 "보기는 어렵다"를 "보기도 어렵다"로 고친다.

○ 제5쪽 제5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신중오

판사장현석

판사이주일